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

# 2025. 1. 21. 보도자료

공보관실 02)708-3411 / 팩스 02)766-7757



## 제 목 : 1월 변론 안내

- 헌법재판소는 오는 1. 22.(수) 10:00 대심판정에서 아래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인 (대리인)	피청구인 (대리인)	비고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국회 (법무법인 이공)	대통령 (법무법인(유한) 해광 외1)	

붙임 관련사건 보도자료 1부. 끝

# 보도자료

## 대통령 또는 그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미임명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 [ 공개 변론 ]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22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변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피청구인인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이 2024. 12. 26.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 중 1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청구인 국회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인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변론을 들은 뒤, 권한침해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2025. 1. 21.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 사건개요

- 청구인 국회는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하는 안에 관하여, 위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2024. 12. 26. 본회의에서 선출안을 의결하였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국회에서 선출된 사람 중 2인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나머지 1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작위는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

## □ 청구취지

1. 청구인이 2024. 12. 26.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아니한 행위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권 및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2. 가. (주위적으로) 청구인이 2024. 12. 26.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4. 12. 26.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 □ 청구인의 주장 요지

-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것이므로, 대통령은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의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수 없고,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찬가지이다.
- 국회의장과 국회 교섭단체대표위원들은 2024. 11. 18. 재판관 후보자 추천절차를 2024. 11. 22.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2인을, 국민의힘이 1인을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고, 2024. 12. 26.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위 3인을 재판관으로 선출하였으며, 같은 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 중 2인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현재

까지 나머지 1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임명부작위(이하 ‘이 사건 임명부작위’)는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권 및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다.

- 이 사건 임명부작위는 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러한 권한 침해 상황으로 인한 헌정 질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인 결정, 즉 마은혁이 재판관에 임명되었음을 의제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 국회의 재판관 선출은 여야간 정치적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기 위해서는 여야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하여야 했고, 여야합의의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어 임명을 보류한 것이다.
- 대통령은 국회에서 재판관을 선출한 자를 재판관을 임명할지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므로, 피청구인은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작위의무가 없고, 설령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가 ‘즉시’ 임명할 의무는 아니다.
-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을 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직접 어떠한 작위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적극적인 이행명령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 주요 쟁점

-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작위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

### □ 당사자

- 국회

대표자 국회의장 우원식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담당변호사 양홍석, 정제형)

○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

대리인 변호사 이동흡, 법무법인(해광)(담당변호사 임성근, 곽재욱, 임재  
훈, 김동민, 은연지)